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2295호)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93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정부제출안 (의안번호 제2202295호)	1
2. 이종욱의원안 (의안번호 제2204593호)	2
III.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1.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른 부담금 정비대상	7
2. 항공이용 출국자 및 출국납부금 수납액 현황	8
3. 국제질병퇴치기금 집행 사업내역	9

I. 제안경위

1. 정부제출안 (의안번호 제2202295호)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안일자 : 2024년 7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29일

2. 이종욱의원안 (의안번호 제2204593호)

가.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2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10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8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부제출안 (의안번호 제2202295호)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이종욱의원안 (의안번호 제2204593호)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혁신적 개발 재원으로서 기존의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¹⁾’을 개편하여 설치됨.

국제질병퇴치기금은 법률상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퇴치 및 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국제의약품기구(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 소아마비 근절 이니셔티브(GPEI)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말라리아 의약품 재단(MMV), 결핵퇴치 파트너십 등의 감염병 전문기구와 협업하여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 소외열대질환 퇴치활동 등을 수행하며,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지역 중심의 감염병 예방 및 퇴치 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됨.

동 기금의 주요재원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씩 징수한 출국납부금²⁾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외교

1)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1천원을 부담금 형태로 2007년부터 부과한 것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신설에 따라 폐지됨

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항공기 좌석 등급에 구분이 있는 경우 상위 등급

부장관이 기금을 운영 관리하되 관련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해외여행 출국자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간 관련성 부족에 따른 출국납부금 폐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노력의 일환으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4. 3. 27)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³⁾’을 발표하면서 외교부 소관 부담금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의 폐지를 포함한 부담금 정비방안을 결정한 바 있음.

또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법률안」 이외에 17개의 부담금 근거 법률의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7월 국회에 제출함.

해당 정부 정책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요 재원⁴⁾인 외교부 소관 출국납부금이 폐지될 경우 향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운용이 불가할 것이므로 출국납부금의 폐지를 전제로 해당 근거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

의 좌석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2022년 말 기준 22.4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8개 부담금의 폐지와 14개 부담금의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함

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
3. 기금운용수익금
4.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다만,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폐지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보건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임.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폐지 이후 일반회계(국제기구 사업분담금)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보건 ODA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입장임.

<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지출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 (국제질병 퇴치기금)	2025년 (일반회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안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16,427	국제기구협력(ODA) -국제기구협력사업비	3,381
글로벌 국제질병 퇴치 (730억원)	UNITAID/GAVI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13,010	인도적지원(ODA) -해외긴급구호	(검토중)
	Global Fun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32,525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 글로벌 보건기여 (481억원)	34,500
	CEPI 백신개발 및 비축을 통한 신종감염병 대비사업	23,418		12,271
	GPEI 소아마비퇴치 활동	3,903		1,380
	사업개발관리비	170		-
	소계	73,026		48,151
총합		89,453		51,532

(자료: 외교부)

문 의 처
02) 6788-5268

【참고자료 1】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른 부담금 정비대상

부처	폐지(18개)	감면(14개)
기재부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교육부	■ 학교용지부담금	-
외교부	■ 출국납부금	■ 국제교류기여금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
문체부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출국납부금
산업부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전력산업기본기금 부담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농식품부	-	■ 농지보전부담금
환경부	■ 수질개선부담금 ■ 수익자부담금(댐건설법)	■ 폐기물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용부	-	■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토부	■ 원인자부담금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시설부담금(산업단지) ■ 시설부담금(물류단지)	■ 개발부담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해수부	■ 수산자원조성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방제부담금
산림청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자료: 관계부처 합동,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 3. 27.

【참고자료 2】 항공이용 출국자 및 출국납부금 수납액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출국자	43,149,857	45,415,737	7,025,473	1,657,005	9,815,393	34,300,885	25,342,028
출국납부금	39,152	41,035	9,542	1,349	6,697	29,383	22,855

※자료: 외교부

※2024년은 1월 ~ 7월 실적임.

【참고자료 3】 국제질병퇴치기금 집행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예산	'23년 결산	'24년 예산
□ 질병퇴치사업	36,786	36,095	91,858
•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114	92	159
- 사업개발관리비	114	92	159
•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11,627	11,388	16,952
- WHO 항생제내성 등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대응능력 향상사업	130	130	-
- WHO 전염병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보건관리 서비스 개선사업	916	912	-
- WHO 사하라이남 4개국 소외열대질환 퇴치사업	1,289	1,284	-
- 수단 UNICEF 지역사회기반의 수인성질환 예방사업	1,793	1,783	-
- 탄자니아 UNICEF 콜레라 퇴치사업	1,613	1,604	-
- 사헬지역 5개국 MMV 계절성말라리아 화학예방요법 확산을 통한 말라리아 퇴치사업	1,770	1,753	6,122
-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7개국 TB Alliance 신규 치료요법 도입을 통한 다제내성결핵 퇴치 사업	929	921	3,792
- 네팔·모잠비크 IVI 콜레라 예방사업	1,643	1,631	3,379
- 결핵고위험국가 Stop TB Partnership 혁신제품 개발 및 확산을 통한 결핵 퇴치 사업	1,264	1,238	3,364
- 사업개발관리비	280	133	295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23,270	23,254	73,026
- UNITAI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6,450	6,450	6,505
- GAVI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6,430	6,430	6,505
- Global Fun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10,320	10,311	32,525
- CEPI 백신개발 및 비축을 통한 신종감염병 대비사업	-	-	23,418
- GPEI 소아마비퇴치 활동	-	-	3,903
- 사업개발관리비	70	63	170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1,775	1,361	1,721

※자료: 외교부